[별지 제26호서식] <개정 2019. 4. 25.> (앞 쪽)

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

처리기간
○관광숙박업: 12일 ○관광객이용시설업: 15일 ○국제회의시설업: 14일

신청인	①성 명		②생년월일	
	③주 소	(전화 :)		
④상 호(명 칭)				
⑤업 종				
⑥승인연월일		. . .		
⑦건설장소				

⑧용도변경내용	층 별	변경 전		변경 후	
		용 도	면적(㎡)	용 도	면적(㎡)

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※ 구비서류

1. 변경사유서 2부
2.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(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각 2부
3.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·내장·방화·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(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2부
4.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

수수료
50,000원(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

